Ⅲ.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상 작업범위가 현행 '20개 산재발생 위험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용접·용단 등 대형화재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안전·보건조치에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와 대처가 요구된다.

□ 산재다발사업장 공표 대상 선정 기준이 '재해율'에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재해율'로 변경되었고,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목록에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이 추가되어 향후 마련될 세부 안전검사 범위에 따라 적절한 검사 대비가 필요하다.

□ 한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만 업무상 재해 인정했던 산재법 규정이 현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2017.12.31.까지 입법촉구)을 받아 2017년 내에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는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입법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내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등
출퇴근 시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확대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만 업무상 재해 인정	· 2016.9.29. 헌법재판소는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 – 현행규정은 2017.12.31까지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부분 효력 상실 (2017.12.31.까지 유효)
산재 공표대상 확대	·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제1호 (2017.1.1. 시행)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정보 제공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분해 작업 또는 내부에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설비의 해체·철거 작업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2016.10.28. 시행)
안전검사 대상 확대	· 프레스, 전단기 등 13종	·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 (2017.10.28. 시행)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정기회 부여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2014.7.1. 이후 산업재해가 처음 발생한 사업장* 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고한 경우, 기간 내 산재 보고한 것으로 간주 * 단,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사업장,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는 사업장, 산재은폐 사업장은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2017.1.1. 시행)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험장소 확대	·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20개 산재발생 위험장소 규정	· 산재발생 위험 장소에 철도 차량, 크레인 등 양중기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2개)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2017.1.1. 시행)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개선	· 신설	·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연1회, 2시간 이상)을 받은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로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2016.10.28. 시행)
안전검사 면제대상 확대	· 신설	·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1호 (2016.10.28. 시행 전에 화관법상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도 인정)
이륜자동차 운행 작업 근로자 안전조치 강화	· 신설	· 이륜자동차 운행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 지급 · 이륜자동차의 안전보조장치 및 제동장치 등이 정상작동하지 않을 경우 탑승 금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0호 (2017년 시행 예정) ※ 규제심사 완료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풍속기준 강화	· 순간풍속이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2항 (2017년 시행 예정) ※ 규제심사 완료

대형 화재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	· 신설	·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중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제3항 (2017년 시행 예정) ※ 규제심사 완료
밀폐공간 범위 확대 및 밀폐공간작업 사전 허가절차 수립·시행	· 밀폐공간에 해당되는 장소로 17개 규정 · 작업 전 공기 상태 측정 및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훈련 실시	· 밀폐공간 정의를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확대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결과 등을 검토 후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작업을 실시토록 하는 절차 도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 621조 및 별표18 (2017년 시행 예정) ※ 규제심사 완료